특허와 특허 분쟁

전자신문기자
신선미

최근 국경을 넘어선 세계 각 국간 특허 전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특허 전쟁의 승패 결과는 해당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만큼 주요 잣대로 급부상, 일부에서는 사활을 건 극한 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한·일 전자업계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특허 분쟁은 한 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할 정도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독주하던 PDP 부문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두각이 두드러지자 대대적인 특허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한·일간 특허분쟁은 모두 3건.

이 중 삼성SDI와 후지쓰간 PDP 특허 분쟁은 협상으로 마무리 됐지만 LG전자와 마쓰시타간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세관이 LG전자 PDP제품에 통관 보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우리 산자부 무역위원회에서도 마쓰시타 PDP에 대한 수입 중지 잠정 조치 결정을 내리는 등 민간 업체간 분쟁은 양국 정부간 문제로 비화될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

PDP 분야에서 촉발된 양국간 특허 분쟁은 이제 반도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 뛰어든 하이닉스 반도체를 상대로 도시바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추격으로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놓친 도시바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하이닉스를 겨냥한 사전 견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한·일 양국간 특허 분쟁 사례를 두고 볼 때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일본을 추월, IT 강국의 면모를 일본에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업체들은 후발 주자임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PDP, 액정표시장치(LCD) 등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 업체들을 누르고 시장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어쩌면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위기를 느낀 일본 업체들은 이제 특허권을 내세워 한국 업체를 겨냥한 조직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휴대폰과 MP3 시장을 둘러싸고 한국 시장을 견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만은 않다.

이러한 일련의 특허 분쟁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무턱대고 기술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 전 발족한‘ 특허 CEO 포럼 ’은 환영할 만 하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자 업계 CEO 40여명으로 구성된 이 포럼은 최근 늘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다.

포럼은 향후 한일간 PDP 특허 분쟁 등 갈수록 늘고 있는 해외 업체와의 특허 분쟁 및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 3~4년 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 신기술 동향 조사 ’는 미래를 이끌고 갈 신기술들을 상세하게 조사, 기업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칫 특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의 자세한 동향을 조사함으로써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기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업의 관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 무용지물 ’일 수 밖에 없다.

세계 시장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의 원천 기술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며 특허 분쟁 대처 능력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IT 산업의 효자 품목인 휴대 전화 역시 부품 국산화 비율은 60%를 밑돌고 있다.

결국 외국에 지불해야 할 특허 기술 로열티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불한 특허료만 무려 1조 5000억원,

오는 2010년에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니 새삼 특허의‘ 소중함 ’을 깨닫게 한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특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특허 풀 구성 및 기업내 특허 전담 부서 강화를 통해 기술을 권리화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연구계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이 곳에서 나온 R&D 성과물을 기업체에 이전, 상품화한 뒤 특허로 권리화할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